

예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주택도시기금 총괄위탁기관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관리를 위해 예산과목 신설

2. 주요 개정 내용

사업경비에 ‘(기)등기소송비’ 예산과목을 신설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(도착 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kimjy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316
- 팩스번호 : 051-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조속한 사규 개정 필요

별첨 예산관리규정 일부규정개정안 1부.

예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1](제5조 관련) <u>비용예산 과목표</u>				[별표1](제5조 관련) <u>비용예산 과목표</u>			
1. 일반예산				1. 일반예산			
관	항	목	내용	관	항	목	내용
영업 비용	사업 경비	(신설)	(신설)	영업 비용	사업 경비	(기)등기소송비	기금업무 관련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사례금 등